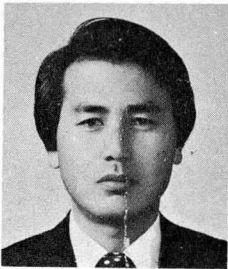


'89 양돈이슈

축산법 개정과 등록·허가제 운영



신 태 식
(본회 경남도협회회장)

법은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농민 소득의 보호와 전업 양돈농가의 육성,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벌기업의 양돈업 투자금지과 양돈업 허가규모 상한선을 들 수 있도록 한 축산법이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축산업 참여금지대상 대기업 기준과 허가상한선 기준 등이 입법예고된 현 시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돈인들이 기울인 노력의 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개정된 법의 운영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1979년도에 너무나도 엄청난 양돈 불경기로 인하여 농가 부업양돈은 전멸되고, 전업 양돈농가도 대다수 파산내지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 여파로 1980년 하반기부터는 돼지의 생산이 부족되어 돼지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였고, 1981년에는 너도나도 양돈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재벌기업들은 부동산 투자를 겸하여 양돈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와같은 추세로 나가면 머지않아 농촌 소득원인 양돈업이 몇몇 재벌기업에 독점되고 농민은 살 터전을 잃을 것이 분명하였다.

이를 우려한 김해지역 양돈 농민들은 1981년 8월 국회와 청와대 및 정부 요로에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를 규제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1981년 11월 7일(축산 125-1357) 농수산부에서는 양돈업은 국민 누구나 영위할 수 있고, 이를 규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회답과 차후연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양돈협회 전국 지부장들에게 대기업 양돈업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함께 건의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양돈협

회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김해지부가 발의하고 전국 지부장들의 지지를 얻어 밤을세워 가면서 토의하여 중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재벌기업들의 압력이 있다는 말이 있어 대표적으로 S제벌에 대한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다가, 서명한 서류를 당국에 압수당한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그후 우리들의 계속된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대한양돈협회장을 지낸 안병규의원을 필두로 하여 농가 부업양돈을 보호하고, 돼지의 수급조절을 위한 양돈업 허가 및 등록제가 의원 입법으로 추가되어 1984년 8월 마침내 축산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시행령에 수출사업, 계열화 및 종돈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겨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은 법망을 빠져 나가고, 전업 양돈농가만 발목을 잡히게 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안지키는 사람은 득을 보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모든 50두 이상이 등록 대상이 되어 대상 농가는 많고 행정력은 못 미쳐서 등록 농가의 관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등록규모 이상이라도 등록하지 않고 무작정 확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또 자발적으로 법에 의거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므로서 불공평한 법 운영이 되어 행정당국과 농민과의 불편한 관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회원이 정부당국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느라고 동문서주하였으며, 협회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금년 4월 축산법이 개정되어 8년전 처음으로 추진한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금지

“

금번 개정된 축산법의 등록·허가제에 대한 조항은 농가 부업양돈의 보호와 전업형 양돈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국자는 그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조항과 허가 두수 상한선이 법조항에 정해진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같은 양돈인으로서 규모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긴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축산법의 등록·허가제에 대한 조항은 농가 부업양돈의 보호와 전업형 양돈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국자는 그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허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허가 상한두수(모든 1,000두) 이상의 기존 대기업농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과조치 기간내에 법에 규정된 두수까지 사육두수를 감축시켜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기업의 양돈업 신규 투자는 철저히 금해야 한다.

또한 가족, 친지 명의로 분산된 농장은 합산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허가 해당 규모인데도 허가 받지 않고 경영하는 농장은 철저히 색출하여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법의 공정한 운영은 행정당국과 농민간의 신



회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다. 물론 대기업농장들의 한국 양돈업 발전에 기여한 공은 높이 인정되어야 하나, 축산업을 제외하고는 농외소득이 거의 없는 농민들을 위해서 대기업농장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양보하고, 한 차원 높혀 종돈개량이나 육가공 및 유통분야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 참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등록 규모에 해당하는 양돈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두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장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운영에 있어서 법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모든 사업은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업 발전에 따른 규모 확대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의 실효도 거두지 못하는 등록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그러나 돼지의 수급조절 정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 조항이 그대로 존립되었는바, 그 적용 규모는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등록제 운영에 있어서는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 발전에 따른 규모가 성장하여 사육두수가 증가될 경우 1년에 2회 정도 변경등록을 받아 그 두수를 인정하고 생산과잉으로 감축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전 해당 농장에 대하여 출하 배정제를 도입하고, 육돈 출하시 적정 비율로 모돈을 강제 출하시켜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째, 법 운영시 생산자 단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장에 대한 사항은 생산자 단체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등록에 대한 법 운영은 생산자 단체에 위임하여 생산조절 등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행정당국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법이라 해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악법이 될 수도 있으니, 금번 개정된 축산법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당국이나 양축인 스스로 상호 협조하여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잘 살려서, 모든 양돈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 안정된 양돈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